

# 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(주)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
2. 제재조치일 : 2021. 9. 10.(검사서 통보일)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보험설계사	업무정지 30일 : 1명, 과태료(1,130만원) : 1명

## 4. 제재대상사실

### 가. 문책사항

#### (1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
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(주)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은 2019.6.10. ~ 2019.7.22.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□□□□□□□□(주)의 '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' 등 총 23건의 생명보험계약(초회보험료 10.4백만원)을 에이원자산관리(주)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△△△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7.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

### < 관련규정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7조 제1항 제8호

(2)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

「보험업법」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(주)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은 2019.7.1.~ 2020.7.22. 기간 중 모집한 □□□□□□□□(주) ‘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’ 등 15건의 생명보험계약(초회보험료 6.3백만원, 모집수수료 9.6백만원)의 체결과 관련하여 15명의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7.6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8조